

# 한국과 일본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비교 연구

: 교직대학원과 교육대학원을 중심으로

金寶林\*

(e-mail: kimbr@cbnu.ac.kr)

---

## 目次

---

1. 서론
  2. 한국과 일본의 교원양성제도 비교
  3. 한국과 일본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비교
  4. 결론: 한국과 일본의 비교와 제언을 대신하며
- 

## 1. 서론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교육의 개혁 방안을 궁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중에서 고등교육은 국가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현대 지식기반사회에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 개혁 요인 중 교원은 교육 활동의 가장 중요한 주체이며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직의 전문화,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교원양성, 교원임용, 교원연수제도는 부분적으로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특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의 양성에서 양성

---

\* 충북대학교, 부교수, 역사교육

기간, 교육과정의 변천, 교사 자격 기준, 수급 불균형 등이 논의의 핵심이 되어 왔다. 2018학년도에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는 교원양성기관의 평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수 기관에 대한 지원과 등급이 낮은 기관에 대한 정원 감축 등이 방법을 통해 특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고도의 지식기반사회를 지지해 줄 교육대학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합의와 올바른 미래 경영 목표의 설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편, 2006년 일본에서는 교원양성 시스템에서 학부단계에서의 교원양성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대학원 단계에 있어서 양성과 재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는데 이것이 ‘교직대학원’ 제도이다. 이는 교육을 둘러싼 사회상황의 변화, 교육과 관련하여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과 풍부한 인간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sup>1)</sup>

글로벌화가 급격한 추세로 진전되는 가운데 일본에서 고학력화 현상은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핀란드나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석사 차원에서 교원양성을 하면서 고도의 전문성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일본의 경우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하겠다.<sup>2)</sup>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을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빈번한 문화 교류를 통해 서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왔다. 따라서 석사 차원에서 중등 교원 양성 제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히 양국의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방향과 특징을 비교하는 것은 한국의 교육정책방향 설정에 시사성을 준은 물론 학문적으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양 기관의 특징을 살피고, 교원양성기관으로서 한국의 교육대학원과 일본의 교직대학원의 평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최근 평가에 대한 연구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국과 일본의 대학평가체제를 비교한 연구로는 이영호(2014)<sup>3)</sup>와

1) 천호성(2009) 「일본 교원정책의 전개와 동향 - 교원의 양성, 채용, 연수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4집 1호. p.25.

2) 미국의 경우 4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며 각 주에서 면허증 발급, 영국은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양성과정(3-4년) 또는 학사학위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교직전문과정(1년)에서 양성하며 교육장관이 인정한 양성과정 수료자에게 정교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 독일은 대학이 교원양성과정(3.5년-5년)에서 양성하며 제2차 국가시험 합격 후에 각 주에서 자격을 인정, 프랑스는 석사과정(2년)에서 양성하며 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석사과정 제2학년 재학자를 대상으로 교원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초임 1년 종료 후 심사에 의해 자격 부여.(남경희(2014) 「교육학 이론 및 실제 : 일본의 교원양성 정책 동향과 과제 고찰」, 『韓國 初等教育』 제25집 1호. pp.22-23)

3) 이영호(2014) 「일본 대학인증평가정책의 변천과 과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8집 2호, pp.81-96.

이영학(2010)<sup>4)</sup>의 논문이 있다. 여기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관평가인증제를 비교하고 있는데, 두 논문 모두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는 다루고 있지 않다. 보다 시기적으로 이전의 논문으로는 박남기(2004)<sup>5)</sup>의 호주, 프랑스, 일본의 대학 평가 제도를 소개하고 있는 연구, 한용진·정일환(2005)<sup>6)</sup>이 한국과 일본 대학 평가체제를 비교하고 있는 논문이 있다. 그러나 두 논문 모두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평가를 다루지 않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10년 전의 상황을 다루고 있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현재 교원양성기관 교육 정책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공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시되면서 학교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가 행해졌으나 여전히 학교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의 교육책무성과 학교 평가와의 관계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학교 평가는 이러한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sup>7)</sup>

한국의 대학에 대한 평가는 1982년 대학교육협의회가 발족되면서부터 시작되었고 1994년부터 평가의 절차와 방법은 미국의 기관평가 인증 방식을 채택하여 대학종합평가인정제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2000년대 도입한 일본의 외부 제3자 인증평가는 한국에 비해 늦게 시작하고 있다.<sup>8)</sup>

그러나 늦게 출발한 일본의 인증평가제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가들을 모델링하여 ‘청출어람’의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한국과 일본의 교원양성기관의 특징을 비교한 후, 일본의 최근 교원양성정책 개혁의 일환으로 나온 ‘교직 대학원’과 한국의 ‘교육 대학원’의 평가체제를 비교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원양성기관의 현재 모습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사범대학의 교원양성평가를 따로 실시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전체 대학의 인증평가로 학부과정의 교원양성평가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 수준의 한·일간 교원양성평가 기관의 평가 비교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국의 교육대학원과 일본의 교직대학원은 모두 교원양성과 재교육의 두 가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63년부터 교육대학원

4) 이영학(2010) 「한국과 일본의 기관평가인증제 비교 연구」.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5집 1호, pp.1-21.

5) 박남기(2004) 「호주, 프랑스, 일본의 대학 평가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대학평가제도 발전 방향」. 『比較教育研究』 제14집 2호, pp.67-94.

6) 한용진·정일환(2005) 「한국과 일본의 대학평가체제 비교 고찰」, 『比較教育研究』 제15집 3호.

7) 김정민 외 3인(2009), 『교육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 평가 및 지원 전략 연구(RR2009-30)』, 한국교육개발원, pp.1-2.

8) 이영호(2014) 「앞의 논문」, pp.92-93.

을 교원양성기관에 편입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최근까지 개방적 학부 중심의 교원양성기관을 운영하던 것을 최근인 2006년에 보다 전문적인 교직대학원 창설을 통해 교원양성교육의 개혁의 일환으로 삼으려 한 것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일본 교원양성기관의 평가 체제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2015년에 실시될 제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체제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제3차 인증평가의 개선과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 2. 한국과 일본의 교원양성제도 비교

한국의 중등교사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상위법으로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다. 헌법 제31조 제21조에서는 교원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정교사는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2급의 경우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이나 교육대학원 등에서 석사학위로 받은 사람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원자격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sup>9)</sup> 이처럼 교원양성이 거의 대부분의 대학과 교육대학원 등 대학원 수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교육대학원 간에도 현재 교육대학원의 양성 기능 유지에 대한 반론도 있으며 재교육 기능만을 수행하는 교육대학원의 경우는 교사들의 연수 및 학위 점수 축소로 인한 입학지원자의 감소로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어 정원을 스스로 줄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양성과정 축소 정책에 따라 교육대학원들의 평가가 낮게 나온 관계로 양성 승인 인원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sup>10)</sup>

한편 일본은 패전 후 1949년에 ‘교육직원면허법’을 제정하여 대학에서 일정 단위를 이수하면 누구나 교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개방제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전후 개방제와 면허장주의를 원칙으로 한 대학에서의 교원양성이라고 하는 이념과 시책은 21세기의 지식기반사회에 걸맞는 교원양성을 위해 대대적인 개혁이 모색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2006년 중앙교육심의회는 ‘금후의 교원양성 면허제도에 관해서’라는 답신에서 ‘10년 단위로 교원면허 갱신제’, ‘교직실천연습의 신설’, ‘교직대학원의 창설’ 등을 제안하였고, 이는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이행, 실시되고 있다. 이

9) 류팅팅, 박창언(2013) 「한국과 중국 중등교사 양성제도의 비교」, 『교사교육연구』 제52집 3호, pp.591-592.

10) 이일용(2012) 「교원양성정책의 변화에 따른 교육대학원의 역할과 과제」,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0집 3호, pp.31-32.

러한 방안은 교원의 자격은 있으나 그 자질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교원의 실천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른 개혁 방안으로 중앙교육심의회는 2012년 8월의 ‘교직 생활의 전체를 통한 교원의 자질능력의 종합적인 향상 방책에 관하여’라는 답신에서 ‘교원양성의 석사 차원화’, ‘교원면허 제도의 개혁’, ‘교육위원회·학교와 대학의 연계·협동 강화’ 등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sup>11)</sup>

일본의 현재 교원양성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유형은 종래의 사범대학이 학사학위 과정을 개설한 국립대학이 된 경우로 여기서는 의무적으로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현재 이러한 국립 교원양성계 대학 현황은 학부과정 대학 수는 22개, 대학원(석사과정) 22개 대학, 교직대학원(국립 19개, 사립 6개 총 25개)으로 파악된다.

또 다른 유형은 교원양성계 국립 대학교 및 교육학부 이외에 국립, 사립, 지방 전문대학 및 대학교에서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경우이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기관들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2011년 현재 교직과정을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전체의 81.1%에 해당한다.<sup>12)</sup>

한편 교직대학원은 기존의 대학원 석사 과정과는 달리 고등교육기관의 목적적 재편, 즉 아카데미 학위와 전문직업인 학위와의 차이를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여기서는 고도 전문 직업인 양성이라고 하는 목적적 기능과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복합적인 학교교육 과제의 해결을 위해 교사의 역량 형성에서 요구되는 실천성과 전문성의 고도화를 추구하고 있다.<sup>13)</sup>

교직대학원 제도의 창설에 있어서 구체적인 제도와 설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5개의 방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교직에 요구되는 고도의 전문성육성을 위한 특화, 이론과 실천의 융합의 실현, 확실한 수업 능력과 풍부한 인간성의 육성, 교사를 받아들이는 측(학교 현장 등)과의 연대 중시, 제3자에 의한 평가 등 교원에 대한 검증, 질적 개선 시스템의 확립 등이다. 교육과정도 학교 현장에 있어서 핵심적 지도적 교원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설해야 하는 수업과목의 영역으로서 ①교육 과정의

11) 남경희(2014) 「앞의 논문」, p. 22.

12) 남경희(2014) 「위의 논문」, p.24.

13) 中央教育審議會(2005, 22-23)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본 과정의 목적은 전문적인 교원의 양성 또는 연수를 위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단 각 대학의 특색과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원상을 설정하는 등 교육 목표나 방침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천호성(2009), 「앞의 논문」, p.26.)

편성과 실시에 관한 영역, ② 교과 등의 실천적 지도 방법에 관한 영역, ③ 학생 지도와 교육 상담에 관한 영역, ④ 학급경영이나 학교 경영에 관한 영역, ⑤ 학교 교육과 교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에 관한 영역 등으로 이론과 실천의 융합을 의식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다.<sup>14)</sup>

이러한 방침에 따라 교직 등의 실무 경험이 있는 교원, 즉 실무가능 교원을 전임교원의 4할 이상 두는 것을 법령으로 규정하고, 45단위 중 10단위 이상은 학교 등에서의 실습을 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의 석사과정과는 달리 교직대학원에서는 연구·지도를 받는 것과 석사 논문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학은 7년마다 기관별 인증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교직대학원은 5년에 1회, 분야별 인증평가가 의무화되어 있다.<sup>15)</sup>(남경희 2014, 28)

이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양국의 교원양성기관의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양국의 교사양성기관의 특성 비교

비교 항목	한국	일본
양성기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종합대학, 교사양성대학, 교육학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교직대학원
설립유형	국·사립 병행	국·사립 병행
통합여부	초등 분리	통합형
종합대와의 관계	독립(초등) 종합대 내(중등)	종합대 내, 독립형 병행
개방형 여부	초등 폐쇄형 중등 준개방형	초, 중등 모두 개방형

“출처: 공종현(2010) 「한국과 일본의 중등교원 양성제도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63. 자료를 수정 활용함.”

<표1>과 같이 중등 교원을 양성하는 기관은 한국의 경우, 오직 종합대학 내에서의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이며 일본은 종합대학, 교사양성대학, 교육학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교직대학원 등을 그

14) 천호성(2009) 「위의 논문」, pp.25-26.

15) 中央教育審議會(2005, 22-23)의 중간보고에 의하면 “핵심적 지도적인 교원의 양성과 연수의 장으로써의 수준의 유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학으로서의 자기 점검, 평가 혹은 인증 평가가 중요하다. 대학 관계자, 학교관계자, 지방교육행정 담당자 등에 의해 구성된 인증평가기관을 만들고, 여러 가지 개선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관계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천호성(2009), 「위의 논문」, 27)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보다 개방적이라 할 수 있다.

### 3. 한국과 일본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 비교

한국의 대학평가제는 대학설립을 정부가 인가함으로써 사전규제를 하고 있으며, 1990년대 중반에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초반부터 대학교육협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3자 외부평가를 실시해 왔다.

대학교육협의회는 1982년 발족 당시부터 장학적 성격의 평가를 실시해 2차례(1차:1982~1986년, 2차:1988~1992년)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1987년 대학평가를 더욱 강화하여 평가인증제로 전환하자는 교육개혁심의회 의 건의에 따라 1994년 평가인증제로 전환하여 2차례(1주기:1994~2000년, 2주기:2001~2006년)의 기관평가인증제를 시행하였다.

한편 정부는 OECD와 유네스코가 2005년에 권고한 「UNESCO/OECD 국경을 넘는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지침」에 따라 2007년 ‘고등교육기관이 평가 및 인증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제11조 2항을 신설하였다. 동 법률 및 관련 시행령 등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은 의무적으로 2년 주기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해야 하며, 기관 평가 인증제 및 프로그램 평가 인증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기구는 정부의 인정을 받아야 했다.<sup>16)</sup> 그 결과 2010년 정부가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회의 대학평가원을 기관평가기관으로 인정하여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2010년 정부로부터 대학평가원을 부설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4년제 대학교에 대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같은 시기에 전문대학교육협회는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을 부설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2년제 전문대학교를 대상으로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sup>17)</sup>

한국의 교원양성평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실행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센터가 만들어져 모든 교원양성평가를 전담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밝히고 있다.<sup>18)</sup> 첫째,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향상, 둘째, 교원양성기관의 법적 책임확

16) 이영학(2010) 「앞의 논문」, pp.4-5.

17) 이영호(2014) 「앞의 논문」, p.82.

18) 교원양성기관 평가센터 <https://necte.kedi.re.kr/Home.action>(검색일 : 2014.10.1).

보, 셋째,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참고자료 제공, 넷째, 교직원망자, 시·도교육청 및 학교 등에 정보 제공 등이다.

컨설팅 중심의 시범평가 성격을 띠었던 1주기 평가는 1998년부터 4년제 대학 중 사범대학이 설치된 41개 대학을 시작으로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에 대한 평가가 2002년까지 실시되었다. 이어서 2주기 평가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4년제 교원양성기관을 대상으로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의 교원양성과정별로 실시되었다.

3주기 평가는 대학 내에 설치된 모든 교원양성기관(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을 동시에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기본 방향과 모형,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공청회가 2009년 7월에 이루어졌다.

2010년에는 사범대학이 있는 대학 46개와 교육대학 10개를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방문 평가, 수업시연 평가, 만족도 조사 등으로 평가 방법을 다양화하여 시행하였다.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의 총 배점은 1,000점이며 영역별 배점은 경영 및 여건 영역 450점, 프로그램 영역 300점, 성과 영역 250점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대학은 서면 평가를 받기 위하여 2010년 5월 10일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5월 31일부터 수업시연평가, 7월 5일부터 현장방문평가를 받았다.<sup>19)</sup> 한편, 3주기 평가 절차는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

시기	절차
7월	평가기획단계-평가지표, 평가 추진 계획 확정, 평가 설명회 개최 및 평가 편람 보급
8월~익월 5월	평가지행단계(자체평가)-평가대상기관 내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자체평가 실시 및 보고서 제출, 평가위원 구성 및 연수(평가위원 구성결과 교과부 보고)
5월~8월	평가지행단계(서면평가)-자체평가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 실시(서면평가결과는 현장방문평가 시 참고자료로 활용)
9월	평가지행단계(현장방문평가)-수업실연 평가 실시(기관당 1일), 현장 방문 평가
11월	평가결과 확정 및 발표 단계-평가결과 수합 및 종합 등급 판정(A, B, C, D 4등급), 이의 신청 접수 및 처리(평가심의위원

19) 김용진(2010) 「3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평가 수검자의 관점에서」, 『윤리교육연구』 제23집, pp.332-333.

	회), 평가결과 발표
12월	평가결과 활용 단계-종합보고서 및 평가대상 기관별 보고서 작성, 우수 사례집 발간, 대학 요청시 컨설팅 제공
익년 1월~12월	재평가단계-재평가 대학에 대한 평가 실시(C또는 D 등급을 받은 교원양성과정)이 있는 대학, 재평가 대학 결과 발표
익년 2월~	행·재정 조치 단계-재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평가센터(내용을 재구성함.)

[https://necte.kedi.re.kr/EvalPlan.action?gbnNum=1\(검색일 2014. 10. 21\)](https://necte.kedi.re.kr/EvalPlan.action?gbnNum=1(검색일 2014. 10. 21))

교육대학원의 입장에서 보면 7월의 평가 설명회 참석을 시작으로 익년 5월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데까지는 10개월의 시간이 걸리며 다시 교육개발원으로부터 평가결과를 받는 데까지는 12월까지의 약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한편, 구체적인 3주기 교원양성기관 중 교육대학원 평가지표 및 배점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지표

평가 영역	평가항목	평가지표
1. 경영 및 여건 (450)	1.1 발전노력 및 특성화 (40)	1.1.1.1 발전계획 추진 관련 예산집행률(20)
		1.1.1.2 특성화 및 국제화 계획 추진 관련 예산 집행률(20)
		특성화(10) 국제화(10)
	1.2 교원(270)	1.2.1.1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80)
		1.2.1.2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40)
		1.2.1.4 전임교원 담당 강의시수 비율(10)
		1.2.1.5 교육기관 또는 전공 관련 기관(산업체) 근무경력을 가진 전임교원 비율(10)
		1.2.2.1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40)
		1.2.2.2 전임교원의 학교현장 이해 프로그램 참여 비율(20)
	1.3 시설 및 행·재정 (140)	1.3.1.1 수업행동분석실의 활용률(20)
		1.3.2.3 유급조교 확보율(10)
		1.3.3.1 교육비 환원률(40)
		1.3.3.2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20)
2. 프로그램 (300)	2.1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100)	2.1.1.1 교원자격 취득자의 교과내용영역 기본이수과목 이수학점 비율(30)
		2.1.1.2 교원자격 취득자의 교과교육과목 이수학점 비율(20)
		2.1.1.3 교원자격 취득자의 교직이론 및 교육실습과목 이수학점 비율(20)
		2.1.1.4 교원자격 취득자 중 특성화 프로그램 이수자 비율(20)

		2.1.1.5 졸업자 중 특성화 프로그램 이수자 비율(20)
		2.1.1.6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 현장 요구 반영 만족도(10)
	2.2 수업(110)	2.2.1.1 교과교육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 수업 학점비율(20)
		2.2.1.2 교직이론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 수업 학점비율(20)
		2.2.1.3 전공개설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 수업 학점비율(20)
		2.2.1.4 공통개설과목 교수자 전공 일치 수업 학점비율(20)
		2.2.1.5 교직이론 강좌당 학생 수(30)
		2.2.1.6 강좌당 학생 수(30)
		2.2.1.8 강좌 운영의 충실도(40)
		2.2.1.9 수업 만족도(20)
2.4 무시험 검정(20)	2.4.1.1 무시험검정 최소기준 적용 관리의 정확성(20)	
2.5 초·중·등 기관교류 (10)	2.5.1.1 초·중·등 교원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실적(10)	
3. 성과 (250)	3.1 경영성과 (30)	3.1.1.1 중도탈락 학생 비율(10)
		3.1.1.2 재학생 충원률(20)
	3.2 교육성과 (220)	3.2.1.1 예비교사 수업수행능력(40)
		3.2.2.1 석사학위 수여의 엄정성(60)
		3.2.2.2 국·공·사립학교 교원임용률(60)
		3.2.3.1 재학생 만족도(40)
		3.2.3.2 졸업생 현직교사 만족도(40)
3.2.3.3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4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09)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편람』, pp.23-24.”

3주기 평가지표에서는 교육성과(24%)→교원(21%)=수업(21%)→시설 및 행·재정(14%)→교육과정이 편성 및 운영(12%)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성과를 제외하면 교원 관련 지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20)</sup>

한편, 1~2주기 평가에서 평가의 결과가 대학에 대한 행·재정 조치와 직접 연계되지 않아 국가의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대한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3주기 평가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하되,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해당 대학의 교원양성과정에 대한 행·재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3주기 평가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교원양성기관별로 A(우수), B(보통), C(미흡), D(부적합) 등으로 판정하며, C(미흡) 이하인 대학 및 학과나 전공에 대하여는 교원양성 과정 폐지 또는 정원 감축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하였다. 특

20) 김운중(2012)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척도의 적절성 검토」,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0집 3호. p.151.

히 교육대학원의 경우 C등급의 경우 양성기능 50% 축소, D등급의 경우 양성기능 폐지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국가적인 질 관리 및 예비교원 양성 인원의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sup>21)</sup>

2010년의 3주기 평가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 3주기 신규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

양성과정	전체수	평가등급			
		A	B	C	D
사범대학	45	8	27	10	0
일반대학 교직과정	49	0	0	18	31
교육대학교	10	1	5	4	0
교육대학원	54	1	2	15	36

“출처: 교원양성기관 평가센터. 3주기 교원양성평가 결과(종합).

<https://necte.kedi.re.kr/Home.action>(검색일 : 2014.10.1).”

위의 표에서 살펴보는 것과 같이 교육대학원의 신규 평가는 총 54개 대학에서 실시되었다. 그중 A등급 1개 대학(1.9%)과 B등급 2개 대학(3.7%)을 제외하고 나머지 51개 대학은 모두 1년의 재평가 기간을 두어 재평가를 실시하였고 다음해에 한 단계씩 평가 결과가 상승한 대학들이 있다.

한편 일본의 대학평가 정책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크게 3단계의 변천을 하여왔다. 1947년에 창설된 대학기준협회는 대학기준(1947)을 제정하여 회원대학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대학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문부과학성은 1956년 대학기준협회의 대학기준을 수정하여 대학설립기준을 문부성령으로 제정하여 대학의 설립인가에 대한 행정권한을 강화하였다. 그 후 문부성은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수량적 기준을 중시하는 대학설립 기준을 근거로 대학에 대한 사전규제를 하였다. 이와 같은 엄격한 사전규제는 1991년 대학설립기준을 대폭 간소화하였다. 1991년 ‘대학교육의 개선에 관하여’라는 대학심의회회의 답신은 대학들이 자기점검을 하고 스스로를 평가하는 체제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였다.<sup>22)</sup>

이렇게 제도화된 대학마다의 자기점검·평가는 1997년에는 587개교였던 전체대학 중 88%에서 실시하고 결과의 공표는 65%의 대학이 실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sup>23)</sup> 이러한 상황에서 1998년 대학심의회 답신인 ‘21세기 대학상과 이후 개혁방책에 관하여’(1998.10.26)에서는 자기점검,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대학경쟁력을 강화할

21) 김운중(2012) 「위의 논문」, pp.146-147.

22) 이영호(2014) 「앞의 논문」, p.83.

23) 申本岡(2005) 「大學教育の外部評價 大學教育の外部評價 一教育成果に對する視点の多樣化とその課題一」, 『次世代 人文社會研究』 第1輯. p.259.

수 있는 방안으로 제3자 평가를 제안하였다. 이 제안에 따라 1999년 학위수여기구(NIAD: 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에 가칭 ‘대학평가기관설립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고 2000년 4월에는 학위수여기구에서 독립행정법인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NIAD-UE: National Institution for Academic degrees and University Evaluation)로 개편되었다.<sup>24)</sup>

이후 2004년 4월부터는 “국공립의 모든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이하 대학 등이라고 칭함)가 정기적으로 문부과학대신의 인증을 받은 평가기관(인증평가기관)에 의한 평가(인증평가)를 받는 것으로 하고 이에 따라 대학 등은 해당 대학의 교육연구 등의 종합적인 상황에 대해서 7년 이내 마다 인증 평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전문직대학원은 5년 이내)”는 제도가 실시되었다.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평가의 목적을 첫째, 평가결과를 이용하여 대학 등이 스스로 개선을 꾀하고 둘째, 평가결과가 공표됨에 의해 대학 등이 사회에 의한 평가를 받는다고 밝히고 있다.<sup>25)</sup>

한편, 2007년 6월에 학교교육법을 개정하고 제42조<sup>26)</sup>에서 학교 평가에 관한 근거가 되는 규정, 제43조<sup>27)</sup>에서 학교의 적극적인 정보 제공에 대해 규정을 새로이 하였다. 학교교육법의 규정들을 받아 학교교육법시행규칙을 동년 10월에 개정하고 자기평가의 실시와 공표(제66조), 보호자등 학교 관계자에 의한 평가의 실시와 공표(제67조), 이들 평가결과의 설치자로의 보고(제68조)에 대해서 새로이 규정하였다.<sup>28)</sup>

일본의 대학평가체제는 한국과 같이 각 대학은 정부가 규정하는 대학설립기준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후 자율적으로 교육과 연구 등에 대한 자기점검평가를 실시하여 공표함과 동시에 제3자 조직이 시행하는 인증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외부평가에는 문부과학성에 설치된 국립대학법인평가위원회에 의해 국립대학들만 받는 국립대학법인평가와 모든 대학(단기대학 포함) 및 고등 전문학교들이 받는 인증평가가 있다. 2014년 현재, 문부과학성의 인정을 받아 제3자 인증평가를 시행하는 인

24) 許貴珍(2002) 「大學評價制度에 관한 研究」, 『기업경영연구』 제8집 1호, p.97.

25) 文部科學省(2010) 「學校評價ガイドライン」(平成22年7月20日), p.1.

26) 소학교는 문부과학대신이 정하는 바에 의한 해당 소학교의 교육활동 그 외 학교 운영의 상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학교 운영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에 의해 그 교육 수준의 향상에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文部科學省 學校教育法 第42條)

27) 소학교는 당해 소학교에 관한 보호자 및 지역 주민 그 외의 관계자의 이해를 심화함과 함께 이들과의 제휴 및 협력의 추진을 위해 당해 소학교의 교육 활동 그 외 학교 운영의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한다.(文部科學省 學校教育法 第43條)

\*이 규정은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중등교육학교, 특별지원학교, 전수학교 및 각종 학교에 각각 준용한다.

28) 문부과학성(2007) 「학교평가에 관한 학교교육법·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규정」

[www.mext.go.jp/a\\_menu/shotou/gakko-jyoka/08021216.htm](http://www.mext.go.jp/a_menu/shotou/gakko-jyoka/08021216.htm) (검색일: 2014. 10.24)

증평가기관은 크게 평가대상별로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와 전문직 대학원으로 구분된다. 이를 표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표 5> 인증평가기관의 인증에 관한 심사위원회 인증 평가기관 일람

1. 대학 등의 기관별 인증평가기관		
분류	기관 이름	인증 년도
대학	공익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	2004. 8. 31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2005. 1. 14
	공익재단법인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2005. 7. 12
단기대학	일반재단법인 단기대학기준협회	2005. 1. 14
	공익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	2007. 1. 25
	공익재단법인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2009. 9. 4
고등전문학교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 수여기구	2005. 7. 12
2. 전문직 대학원의 분야별 인증평가기관 <sup>29)</sup>		
분류	기관 이름	인증 년도
법과대학원	공익재단법인 일변련(日辯聯) 법무연구재단	2004.8.31
	독립행정법인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2005.1.14
	공립재단법인 대학기준협회	2007.2.16
교직대학원, 학교 교육계 <sup>30)</sup>	일반재단법인 교원양성평가기구	2010.3.31

“출처: 文部科學省 高等教育局高等教育企劃課 認証評價機關の認証に關する審査委員會 『認証評價機關一覽』(2012년 7월 31일 현재)을 재구성함.”

문부과학성에서는 학교평가 가이드라인(文部科學省 2010, 28-29)을 각 평가대상기관에 배포하고 제3자 평가의 특성과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31)</sup>

첫째, 자기 평가와 학교 관계자 평가를 최대한 유효하게 활용하고 학교 운영의 운영을 보다 충실하게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의 평가와 함께 학교 운영의 질을 확인하는 것과 함께 학교의 우수한 부분과 개선해야 할 과제 등을 학교와 설치자 등이 다시 한 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이 같은 제3자 평가의 충실을 통해 학교가 스스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전문적인 분석과 조언에 의한 학교의 우수한 부분과 학교의 과제와 그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명확하게 하고 구체적인 학교 운영의 개선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하는

29) 법과대학원, 교직대학원 이외에도 경영, 회계, 조산, 임상심리, 공공정책, 패션, 정보, 창조기술, 원자력, 공중위생, 지적재산, 미용, 환경 등의 분야에 다양한 기관들이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30) 2014년 현재 25개 교직대학원이 있으며, 학교 교육계는 전문직대학원으로서 日本教育大學院大學 大學院 學校教育研究科學校教育專攻(2006년 인증) 1개 학교가 있다.(一般財團法人 教員養成評價機構 <http://www.iete.jp>(검색일 : 2014.10.1).

31) 文部科學省(2010) 「學校評價ガイドライン」(平成22年7月20日), pp.28-29.

등 학교의 활성화에 관계된 것이 기대된다.

셋째, 제3자 평가가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자기평가와 학교관계자 평가가 적절하게 행해질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제3자 평가에는 자기평가와 학교관계자 평가가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를 검증하고 학교 평가 시스템 전체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도 기대된다.

문부과학성은 인증평가기관이 인증평가를 실시할 때는 대학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행하며 대학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령에서 대략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상세한 기준은 큰 범위 내에서 인증평가기관이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이 정한 대학평가기준이 대략은 첫째, 국가가 인증할 때의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한 것, 둘째, 인증평가기관이 평가를 실시할 때에 국가로서 최저한, 평가해야하는 항목과 평가방법을 명확하게 한 것, 셋째, 대학평가기준에 들어가 있는 내용 가운데 학교교육법 및 설치기준에 관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 수준을 하회하지 않는 것이다.

한편, 2008년도부터 만들어진 교직대학원의 평가를 위해 일반재단법인 교원양성평가기구(The Institute for the Evaluation of Teacher Education 이후 교원양성평가기구로 지칭)가 2010년에 교직대학원 평가기관으로서 문부성으로부터 인증 받았다. 이 재단이 만들어진 설립 취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sup>32)</sup>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중 ‘금후의 교원양성·면허제도의 존재에 대해’(1996년 7월 11일)에 의해 대학원 단계에서 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역량 있는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직대학원제도의 창설이 제안되어 2008년에 19개 대학, 2009년에 5개 대학, 2010년에 1개 대학 총 25개 대학의 교직대학원이 개설되었다. 각 교직대학원에서는 부단의 검증과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수한 교원양성의 질 보증을 꾀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다른 전문직 대학원과 같이 학교교육법 제109조 제3항, 학교교육법 시행령 제40조에 근거하여 교육과정, 교원조직 그외 다른 교육 연구활동의 상황에 대해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평가기관에 의해 5년마다 제3자 평가(인증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였다. 지금까지 교직대학원을 인증 평가하는 기관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교원양성평가기관은 임의단체 이면서, 교직대학원을 대상으로 교육내용과 방법, 지도체제를 비롯하여 대학원 운영의 전반에 걸쳐 인증평가를 행하는 인증평가기관으로서 2010년 3월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인증 받았다. 교원양성평가기구는 교직대학원 이외의 학교교육계 전문직 대학원(현재 1개 대학원)의 인증평가에 대해서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교원양성평가기구는 인증평가사업 외에도 장래에는 교직과정 전체의 질적 수준 향상을 목표로 과정 인증되는 각 대학의 교직 과정의 평가에도 시야를 넓혀 활동할 것이다.

32) 一般財團法人 教員養成評價機構. 2014. “設立の趣旨” <http://www.iete.jp>(검색일 : 2014.10.1).

위의 설립 취지를 살펴보면, 교원양성평가기구가 일본에서 유일한 교원양성기관의 평가기구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과 달리 2010년이 되어서야 교원양성기관, 그것도 교직대학원만 전문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교원양성기관의 평가 과정을 살펴보면 <표 6>과 같다.

<표 6> 교원양성평가기구의 교직대학원 평가 절차

시기	절차
9월	평가의 신청
다음해 1월	대학의 자기평가 담당자 등의 연수
6월말	교원양성평가기구가 작성한 대학기관별인증평가기준에 근거하여 자기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함
7월~9월말	서면조사 자기평가보고서의 검토와 분석(1개 대학당 5명이 검토)
9월 말~12월 중순	실지조사(1개 대학당 5명이 실시)
익년 1월하순까지	평가 팀에 의한 조사보고서안 정리
2월 상순까지	조사보고서안의 의견 도출
2월 중순	관정위원회에 의한 평가보고서안의 정리
2월 하순	평가보고서안의 의견 도출
3월 상순	관정위원회에 의한 평가결과의 확정(보류, 불인정의 판정에 대한 의견 도출에는 판정위원회 하의 의견도출심사회를 열어 심의함)
3월 중순	이사회에 의한 평가결과의 승인
3월 말	평가결과를 대학에 통지, 문부대신에 보고 및 사회에 공표

\*출처: 中央教育審議會大學分科會 質保證システム部會(第19回)(2012) 『認證評價の實施狀況に關する參考資料(資料2-1)』, p.5.

일본의 경우, 한국교육개발원이 개발한 평가 편람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으로 실시되는 한국의 평가와 달리 평가의 신청이 평가를 받는 대학 측에서 이루어지며, 이를 시작으로 평가결과를 대학 측이 받을 때까지는 약 2년간의 시간이 걸린다.

한편 교직대학원의 평가기준은 총 10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표 7> 일본 교원양성평가기구의 교직대학원 평가기준

평가기준	기준	
1. 이념·목적	1.1	해당교직대학원의 이념·목적이 법령에 준거하여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1.2	인재양성의 목적 및 수득해야 할 지식·능력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2. 학생의 입학	2.1	인재양성의 목적에 응한 입학자 입학방침(입학 정책)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가.
	2.2	입학자 입학 방침에 근거하여 공평성, 평등성, 개방성이 확보되고 적절한 학생의 입학이 실시되고 있는가.
	2.3	실입학자수가 입학정원과 비교하여 적정한가.
3. 교육의 과정과 방법	3.1	(교육과정)교직대학원의 제도 및 각 교직대학원의 목적에 비추어 이론적 교육과 실천적 교육의 융합에 유의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편성되어 있는가.
	3.2	(수업내용, 수업방법, 형태) 교육과정을 전개하는 데에 적절한 수업내용, 수업방법, 형태가 정비되어 있는가.
	3-3	(학교 등에서 실습) 교직대학원에 맞는 실습이 설정되어 적절한 지도가 되고 있는가.
	3-4	(이수지도) 학습을 진전하는 데에 적절한 지도가 행해지고 있는가.
	3-5	(성적평가)성적평가와 단위인정, 수료 인정이 대학원의 수준으로서 적절하고 유효한 것인가.
4. 학습 성과 · 효과	4-1	각 교직대학원의 인재양성의 목적 및 수득해야 할 지식 · 능력에 비추어 학습의 성과와 효과가 있는가.
	4-2	수료생이 교직대학원에서 얻은 학습의 성과가 학교 등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성과의 파악에 노력하고 있는가.
5. 학생으로의 지원체제	5-1	학생상담 · 조언체제, 진로 지원 등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5-2	학생으로의 경제지원 등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6. 교원조직	6-1	교직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교원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6-2	교원의 채용 및 승진 등의 기준이 적절하게 정해져 있고 운용되고 있는가.
	6-3	교직대학원에서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활동이 조직적으로 취해지고 있는가.
	6-4	수업담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려되고 있는가.
7. 시설 · 설비 등의 교육환경	7-1	교직대학원의 교육연구조직 및 교육과정에 대응한 시설 · 설비 등에 도서, 학술잡지 등의 교육 연구 상 필요한 자료가 정비되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
8. 관리운영	8-1	각 교직대학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 운영을 위한 조직 및 그것을 지원하는 사무조직이 정비되어 기능하고 있는가.
	8-2	교직대학원에서의 교육연구활동 등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경비에 대해 배려가 있는가.
	8-3	교직대학원에서의 교육연구활동 등의 상황에 대해 널리 사회에 주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정보가 제공되고 있는가.
9. 점검평가 · FD	9-1	교육의 상황 등에 대해서 점검 평가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개선 · 향상을 꾀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방법이 취해지고 있고 기능하고 있는가.
	9-2	교직대학원의 담당 교원 등에 대한 연수 등 그 자질의 향상(Faculty Development)을 꾀하는 조직적인 방법이 적절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10. 교육위원회 및 학교등과의 제휴	10-1	교직대학원의 목적에 비추어 교육위원회 및 학교 등과 제휴하는 체제가 정비되어져 있는가.
----------------------	------	--

“출처: 一般財團法人 教員養成評價機構(2014. 3. 6) 「教職大學院評價基準」, pp.3-15.”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정량적 평가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묻는 평가지표가 많았다. 다만 각 평가의 취지와 기준을 밝히는 ‘기본적인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달해야 하는지 정량적 요소를 밝히고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6-1의 경우 ‘전문직대학원 설치기준에 규정된 필요한 전임교원의 수’에 해당되는 교원은 첫째, 전공분야에 대해 교육상 또는 연구 상의 업적이 있는 자, 둘째 전공분야에 대해서 고도의 기술·기능이 있는 자, 셋째, 전공분야에 대해서 특히 우수한 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이 과거 5년간 정도에 교육상 또는 연구 상의 업적(교육상의 업적은 예를 들면 교육활동력, 교육상의 방법·내용·평가·교재에 관한 개발 등), 각 교원이 그 담당하는 전문분야에 대해 교육상의 경력, 경험 및 지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자기 점검 및 평가의 결과의 공표 그 외 방법으로 개시되어져 있는가를 보며, 전임교원 가운데에 전공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가지고 또한 고도의 실무 능력을 가진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실무가교원이 필요 전임교원수의 약 40%이상에 해당하는 인수를 두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sup>33)</sup>

한국의 경우 최근 3주기 평가의 교과교육학 교수의 전공일치 기준을 첫째, 박사학위자로서 세부 전공이 교수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 둘째, 체육·예술 분야 교수자와 교과교육 분야의 겸·초빙 교원 중 현장교원 교수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자로서 최종학위의 세부 전공이 교수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 셋째, 교수자의 세부 전공이 교수과목의 학문분야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학위 후 최근 3년간 교수과목 학문분야의 주제로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 게재 논문 200% 이상의 연구물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sup>34)</sup>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교육대학원(3주기)과 교직대학원의 주요한 평가지표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 8>과 같다.

33) 一般財團法人 教員養成評價機構(2014. 3. 6) 「教職大學院評價基準」, p.10.

34) 한국교육개발원(2009)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편람』, p.13.

&lt;표 8&gt; 한국 교육대학원(3주기)과 일본 교직대학원 평가 지표 비교

평가 지표		한국	일본
한국 지표	발전 계획 추진 관련 예산 집행률, 특성화와 국제화	√	
	전공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교과교육과목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기관 근무 경력을 가진 전임교원 비율	√	√
	전임교원담당강의 시수 비율	√	√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	
	전임교원의 학교현장 이해 프로그램 참여비율	√	√
	수업행동분석실의 활용률	√	
	유급조교 확보율	√	
	교육비 환원률	√	√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	
	교원자격 취득자의 교과내용, 교과교육, 교직이론 학점 비율, 무시험 검정 최소 기준 적용 관리의 정확성	√	√
	교육과정 운영의 학교 현장 요구 만족도, 수업만족도, 재학생 만족도	√	
	교직이론 강좌당 학생수, 강좌당 학생수	√	
	초중등 교원 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실적	√	
	중도탈락 학생 비율	√	
	재학생 충원률	√	√
	일본 지표	예비교사 수업 수행 능력	√
석사학위 수여의 엄정성		√	√
졸업생 현직교사 만족도		√	√
해당 기관의 이념 및 목적			√
입학자 방침			√
체계적인 교육과정		√	√
학생 상담 및 조언 체계			√
교원의 적절한 배치			√
교원의 채용 및 승진에서 기준의 적합성			√
연구 자료의 정비			√
교원양성기관의 홍보			√
교육기관 평가 체제 준비 체제의 유무			√
담당 교원의 연수 등 자질 향상을 위한 방법의 유무	√	√	
교육위원회 및 학교 등과 제휴하는 체제	√	√	

<표 9>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발전계획과 특성화, 국제화 등의 실시여부를 묻고 있는데 일본은 해당 기관의 이념 및 목적에 대해 묻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입학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교원양성기관의 특성에 맞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묻는 문항이 있는데 한국은 입학자 전형에 대한 항목이 없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가 일본의 경우보다 정량적인 질문이 많다. 예를 들면, 전임교원 1인당 연구실적, 유급조교 확보율, 등록금 대비 장

학급 비율, 교직이론 강좌당 학생수, 강좌당 학생수, 중도탈락 학생 비율 등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이 모두 실시하고 있는 평가항목 중에서도 같은 취지로 묻고 있는 질문 문항이 서로 다른 평가 척도(한국은 정량적, 일본은 정성적)로 되어 있는 것이 많았다. 예를 들면, 전임교원담당강의 시수 비율이 그것인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6-4 수업 담당에 대해서 적절하게 배려되고 있는가.’로 질문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평가 지표 중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본의 평가 지표에서 ‘9-1 교육기관 평가 체제 준비 체제의 유무’가 보이는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일본에서는 교직대학원 담당 교원의 자질을 평가함과 동시에 한국과 달리 각 대학에서 교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는 평가 지표가 있다. 교원조직에 대한 평가 문항 중 6-3과 6-4는 교원의 연구 활동과 수업 담당에 대한 활동이 조직적이고 부담이 없는 지 묻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강의담당 시수만을 묻는 한국의 평가지표와 다르다. 또한 학생으로의 지원체제를 묻는 일본의 5-1의 ‘학생상담, 조언제도, 진로지원’등에 대한 평가 항목은 한국의 3주기 평가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4주기 평가 때는 양성기관 특성화 지표로서 ‘예비교원의 인성프로그램’을 중요시하겠다는 취지를 나타내고 있다.<sup>35)</sup>

이상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과 일본의 교원양성평가를 아래의 <표 9>에 정리하여 보았다.

<표 9> 한국과 일본의 교원양성기관 평가 비교

비교 항목	한국	일본
교원양성기관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종합대학, 교사양성대학, 교육학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교직대학원
평가주관기관	○교육개발원 교원양성기관평가센터: 교육대학원, 사범대학, 일반대학 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	○대학기준협회, 대학평가·학위수여기구, 일본고등교육평가기구: 종합대학, 교사양성대학, 교육학부, 일반대학의 교직과정 ○교원양성평가기구: 교직대학원
평가주기	5년마다	5년마다

35) 교육부 교원복지연수과(2014. 10. 23)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운영 방안(안)」, p.7.

	1주기: 1998-2002 2주기: 2003-2009 3주기: 2010-2014 4주기: 2015-2017(예정)	2008년 교원양성평가기구가 설립된 이래 평가가 매년 이루어짐.
평가기간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 후 1년 반 만에 평가결과 나눔.	평가 설명회를 개최한 후 2년 만에 평가결과 나눔.
평가결과	A, B, C, D 네 등급으로 나누고 C나 D등급에는 교원양성과정 폐지 또는 정원 감축 등의 행정 조치를 실시	학교는 평가결과를 근간으로 스스로 학교 운영의 개선에 힘쓰고 함께 평가결과를 학교관계자에게 설명, 정보제공. 설치자는 평가결과에 따라 학교의 지원과 필요한 개선 조치를 강구함. <sup>36)</sup>
재평가	재평가 기회가 1번 주어짐	재평가 없음.
실시시기를 정하는 주체	평가를 하는 측	평가를 받는 측

#### 4. 결론: 한·일 비교와 제언을 대신하며

한국과 일본 현행 대학 평가 체제는 대학설립 인가주의의 채택, 자기점검평가(한국의 경우 자체평가)와 제3자 외부평가의 실시 등에서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 프랑스나 핀란드와 같이 석사 학위 과정에서만 교원양성기관을 설치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교원양성기관에 대한 질 관리의 차원에서 1990년대부터 한국은 아시아에서 기관평가 인증제를 선도하는 국가였으나, 현재는 일본이 2002년 기관평가인증제의 체제를 확립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선도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교원양성평가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대학평가는 평가 결과를 사회에 공표하고 권고, 조언하며 각 대학 장점과 개선점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평가결과가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의 평가 방법과 큰 차이가 있다.<sup>37)</sup> 사회와 기업체 그리고 학

36) 평가결과에는 학교의 설치자와 교직원의 임명권자의 지원이 불가결한 것이 포함될 경우가 예상되어지므로 설치자 등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것이 희망된다. (文部科學省, 2010. “學校評價ガイドライン(平成22年改訂)の改訂のポイント”, p.2.)

37) 한용진·정일환(2005) 「앞의 논문」 p.102.

생들이 알아야 할 정보는 양적 지표를 가지고 작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순위가 아니라 그 대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들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거나 대학 자체 평가 체제를 구축하거나 간에 순위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sup>38)</sup>

일본 교직원대학원의 교원양성평가 시스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지적했듯이 한국과 일본의 평가 지표 중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일본의 평가 지표에서 '9-1 교육기관 평가 체제 준비 체제의 유무'가 보이는 것에 반해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제 교원양성기관의 평가인증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끝나는 평가 준비에 많은 대학의 자체평가위원들이 피곤해 하고 있다.

자체평가보고서의 제출 마감일이 임박하면, 평가준비위원들은 증빙서류의 확인 작업과 보고서 작성으로 밤늦게까지 작업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고, 업무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욱 많이 받게 된다. 자체평가보고서의 작성에 있어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윤리적 갈등도 나타난다. 허위작성시 해당지표에 대해 0점 처리를 한다고 하였지만 학과에서 준비한 증빙서류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자체 평가위원은 평가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획득하고 싶은 의욕과 정확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책무 사이에서 윤리적 선택의 판단을 놓고 갈등에 빠지기도 한다.<sup>39)</sup>

따라서 평가 항목에 자체평가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하는 점을 평가하여 평가가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평가 준비와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입학자 전형 방침의 적절성에 대한 항목이 전혀 없고 일본의 경우는 한국에 비해 교원임용률이나 취업률에 대한 평가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상반된 평가의 특징에 대해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는 것을 사회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교원임용률이나 취업률이 교원양성기관만의 문제일까 하는 점은 의문이 남는다. 날로 좁아져 가는 교원임용의 현실과 취업문의 사회 상황 등도 함께 고려해 주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의 경우가 일본의 경우보다 정량적인 질문을 많이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1~2주기 평가에는 정성적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의 편의를 위해 정량적인 평가로 간소화되어 가는 추세인데, 다시 정량

38) 박남기(2004), 「앞의 논문」 p.83.

39) 김용진(2010) 「앞의 논문」, p.336.

적 평가의 확실성으로 인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 순위를 매기는 목적의 평가가 아니라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원양성기관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취지를 반영하는 평가 지표들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평가를 받는 측에 대한 평가자의 배려에 대한 부분이다. 문부과학성에서는 “실시 시기와 일정 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인사이동 등 학교운영의 개선 과정에 영향 있는 요소도 감안하면서 실시자가 자기 평가와 학교 관계자 평가의 실시상황등도 고려하여 적절하게 결정한다. 이 때 제3자 평가가 학교 운영의 개선에 확실하게 관계가 있을 때 각 학교·지역의 실정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체적으로는 단기간 평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장기적인 방법으로 평가대상으로 삼는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생각되어진다.”<sup>40)</sup> 라고 밝히고 있다. 일본의 경우 실시시기를 정하는 주체가 평가를 하는 측이 아니라 평가를 받는 측에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마지막으로,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이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각 대학에서 교원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묻는 평가 문항들이 있다. 평가 결과를 설립자에게 공표함으로써 지원 개선에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평가 결과를 A, B, C, D로 구분하고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과 직결되도록 하고 있다. 보다 강력한 지원체제와 더불어 인원감축과 양성기능 폐지라는 양날을 가진 칼을 평가결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평가의 결과는 국가 차원에서 평가를 실시하거나 대학 자체 평가 체제를 구축하거나 간에 순위보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A, B, C, D 등급의 최저선을 평가전에 미리 공개해야 할 것이다. 등급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 100%는 A등급을 받고 99%는 B등급을 받는 문제, 즉 몇 점 차이로 B가 되거나 행정적 제재를 받는 C가 되는 문제를 평가결과 서열화의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원양성기관 평가가 대학의 책무성 증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목적과 방향에 부합되는 평가도구를 구안하여야 하며, 보다 과학적인 연구와 현장의 의견 수렴이 요구된다.

40) 文部科學省(2010) 「學校評價ガイドライン」(平成22년7월20日), p.34.

## 【參考文獻】

- 공종현(2010) 「한국과 일본의 중등교원 양성제도 비교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 교육부 교원복지연구소(2014. 10. 23)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 운영 방안(안)」
- 김용진(2010) 「3주기 교원양성기관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 평가 수검자의 관점에서」, 『윤리교육연구』 제23집. pp.331-345.
- 김운중(2012)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척도의 적절성 검토」,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0집 3호. pp.145-164.
- 김정민 외 3인(2009), 『교육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 평가 및 지원 전략 연구(RR2009-30)』, 한국교육개발원. pp.1-243.
- 남경희(2014) 「교육학 이론 및 실제 : 일본의 교원양성 정책 동향과 과제 고찰」, 『韓國 初等教育』 제25집 1호. pp.21-38.
- 류팅팅·박창언(2013) 「한국과 중국 중등교사 양성제도의 비교」, 『교사교육연구』 제52집 3호. pp.589-605.
- 박남기(2004) 「호주, 프랑스, 일본의 대학 평가제도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대학평가제도 발전 방향」. 『比較教育研究』 제14집 2호. pp.67-94.
- 이영학(2010) 「한국과 일본의 기관평가인증제 비교 연구」. 『한국일본교육학연구』 15집 1호. pp.1-21
- 이영호(2014) 「일본 대학인증평가정책의 변천과 과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8집 2호. pp.81-96.
- 이일용(2012) 「교원양성정책의 변화에 따른 교육대학원의 역할과 과제」, 『한국교육문제연구』 제30집 3호. pp.19-39.
- 천호성(2009) 「일본 교원정책의 전개와 동향 - 교원의 양성, 채용, 연수를 중심으로」, 『한국일본교육학연구』 제14집 1호. pp.21-39.
- 한국교육개발원(2009)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편람』.
- 한용진·정일환(2005) 「한국과 일본의 대학평가체제 비교 고찰」, 『比較教育研究』 제15집 3호, pp.79-108.
- 許貴珍(2002) 「大學評價制度에 관한 研究」, 『기업경영연구』 제8집 1호, pp.73-113.
- 一般財團法人 教員養成評價機構. 2014. 3. 6. 「教職大學院評價基準」
- 中央教育審議會大學分科會 質保證システム部會(第19回). 2012. 認證評價の實施狀況に關する參考資料(資料2-1). 文部科學省.
- 文部科學省(2010) 「學校評價ガイドライン(平成22年改訂)の改訂のポイント」
- 文部科學省(2010) 「學校評價ガイドライン」(平成22年7月20日)
- 文部科學省 高等教育局高等教育企劃課(2012) 「認證評價機關の認證に關する審査委員會 認證評價機關一覽(平成24年 7月 31日 現在)」
- 串本岡(2005) 「大學教育の外部評價 大學教育の外部評價 一教育成果に對する視點の多樣化とその課題一」, 『次世代 人文社會研究』 第1輯. pp.255-269.

교원양성기관 평가센터 <https://necte.kedi.re.kr/Home.action>(검색일 : 2014.10.1).

한국대학평가원 <http://aims.kcue.or.kr>(검색일 : 2014.10.1).

문부과학성(2007) 「학교평가에 관한 학교교육법·학교교육법시행규칙의 규정」

[www.mext.go.jp/a\\_menu/shotou/gakko-jyoka/08021216.htm](http://www.mext.go.jp/a_menu/shotou/gakko-jyoka/08021216.htm) (검색일: 2014. 10.24)

一般財團法人 教員養成評價機構 <http://www.iete.jp>(검색일 : 2014.10.1).

## 要 旨

This article aimed to overview the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and reveal the differences of the evaluation certific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21st century, knowledge-based society,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 pre-teachers with an environment to improve the specialization as a teache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教職大學院) which is founded recently in Japan has two functions for training teacher and making teacher. It is similar to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Korea. In order to evaluate these schools in Korea and Japan, two countries received the evaluation from the third-party and announce the result.

Teacher Education Evaluation Center of the Korea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KEDI) Korea takes a role of the evaluation f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Korea. The Institute for the Evaluation of Teacher Education mainly works for the evaluation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Japan. In the case of Japan, the day for the evaluation is decided not by the Institute for the Evaluation of Teacher Education but the graduate school. Each evaluation index in Japan is mainly a qualitative assessment rather than quantitative assessment.

キーワード : Pre-Service Teacher Education System, Evaluation Certifi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Japa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 Korea, the Institute for the Evaluation of Teacher Education, a qualitative assessment, a quantitative assessment

투 고 : 2014. 11. 30  
1차 심사 : 2014. 12. 13  
2차 심사 : 2015. 1. 3